

인천광역시 어린이과학관 설립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

인천광역시

인천광역시 어린이과학관 설립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

의안 번호	26
----------	----

제출년월일 : 2010. 8. 19.

제 출 자 : 인천광역시장

1. 제안이유

가. 「과학관육성법」 제23조에 따라 관리운영 조례를 제정하여, 과학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운영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가. 어린이과학관의 목적, 설치, 위치 및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)
- 나. 어린이과학관 부대시설의 사용허가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4조)
- 다. 어린이과학관의 개관 및 운영시간을 규정함(안 제5조부터 6조까지)
- 라. 「과학관 육성법」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관람료 징수 금액 기준 및 감면 기준을 규정함(안 제7조)
- 마. 어린이과학관의 관람금지, 행위제한, 사용허가 취소, 손해배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8조부터 11조까지)
- 바. 어린이과학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위탁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, 위탁운영에 따른 경비의 지원, 지도·감독, 위탁의 취소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(안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)

3. 참고사항

- 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1부

인천광역시 어린이과학관 설립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과학관육성법」 제23조에 따라 어린이의 과학에 대한 탐구심을 함양하고, 과학기술에 대한 이해증진에 이바지하고자 건립한 인천광역시 어린이과학관의 관리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위치) 인천광역시 어린이과학관(이하 “과학관”이라 한다)은 인천광역시 계양구 방축동 108-1번지에 둔다.

제3조(사업) 과학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.

1. 과학기술자료의 발굴·수집·보존·관리 및 전시
2. 과학기술자료에 대한 전문적·학술적인 조사·연구
3. 과학기술교육프로그램의 개설·운영
4. 과학기술자료에 관한 각종 간행물의 제작·배포
5. 국내·외의 다른 과학관과의 과학기술자료·간행물 또는 정보의 교환 및 공동연구 등의 협력
6. 그 밖에 과학관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이 정하는 사업

제4조(사용허가) ① 과학관을 임대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.

② 시장은 과학관의 임대 또는 사용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별표 1에서 정하는 사용료를 부과·징수하여야 한다. 다만, 인천광역시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에 한하여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.

제5조(개관 및 휴관) ① 과학관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을 원칙으로 한다.

1. 1월 1일

2. 월요일(다만, 공휴일과 겹치는 월요일은 익일 휴관)

3. 그 밖에 시장이 관리운영상 휴관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날

② 시장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휴관일에 개관할 수 있다.

제6조(관람 및 대표시간) ① 과학관의 관람 및 대표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관람시간 :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

2. 대표시간 :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

② 시장은 국민 및 외국사절단의 관람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람시간 및 대표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.

제7조(관람료) ① 과학관을 이용하려는 자는 별표 2에서 정한 관람료를 납부하여야 한다. 다만, 인천광역시민에 한하여 상설전시관 개인관람료의 50퍼센트를 감면한다.

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관람료를 면제한다.

1. 국민 및 그 수행자

2. 외교사절단 및 그 수행자

3. 보호자를 동반한 6세 이하의 어린이

4. 65세 이상의 노인

5. 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른 장애인으로 장애등급이 1급부터 3급까지 장애인과 동행하는 보호자 1명

6.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국가유공자, 그 유족 또는 가족

7. 「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독립유공자, 그 유족 또는 가족

8. 「5·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5·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

9. 「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특수임무수행자와 유족
 10. 「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참전유공자
 11. 「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 환자
 12.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공무원
 13. 교육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출입하는 교원으로서 학교장의 협조요청이 있는 자
 14.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
- ③ 이미 징수한 관람료는 과학관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.

제8조(관람의 금지)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관람을 금지할 수 있다.

1. 술에 취한 자
2.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6세 이하의 어린이
3. 악취 또는 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자
4. 화재의 위험이 있는 인화성 물질, 화학류 등을 소지한 자
5. 애완동물을 데리고 입장하는 자
6. 그 밖에 시장이 시설물 및 전시품의 보호, 공공질서 유지 등을 위하여 관람금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

제9조(행위의 제한) ① 관람자는 과학관 전시실 안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

1. 흡연 또는 음주행위
2. 전시물을 손상하는 행위
3. 고성·난무하는 행위
4. 그 밖에 시장이 행위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위

② 시장은 관람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퇴관 조치를 할 수 있다.

제10조(사용허가의 취소)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학관의 사용허가를 취소·정지하거나 그 사용을 제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.

1. 사용허가 목적에 위반된 때
2. 건물, 기물 또는 구조물 등의 시설을 훼손한 때
3.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 사용이 불가능한 때
4.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

제11조(손해배상) 관람자 및 사용자가 고의나 과실로 전시품, 시설물 등을 파손하거나 훼손하는 경우에는 이에 상당하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.

제12조(위탁관리운영) ① 시장은 과학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기술과 능력을 갖춘 기관, 법인, 단체에게 과학관을 위탁할 수 있다.

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과학관을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와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,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.

③ 수탁자는 시장과 협의하여 과학관 관리운영에 필요한 각종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.

제13조(경비지원 등) 시장은 필요한 경우 수탁자에게 과학관의 운영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.

제14조(지도·감독) ① 시장은 과학관의 운영 전반에 관하여 수탁기관을 지도·감독할 수 있다.

② 시장은 운영과 관련하여 위법 부당한 사항, 운영부실 등을 발견한 경우에는 경고, 시정명령, 예산지원 중단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.

제15조(위탁의 취소)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학관의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.

1.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

2. 수탁자가 계약 및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
3. 공익상 위·수탁관리를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

제16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표 1]

인천광역시 어린이과학관 부대시설 사용료(제4조 관련)

층수	시설명	면적[m ²]	사용료	비고
1층	강당	329.09	300,000원	▪ 방송시설/무대/객석180
	카페테리아	131.05	입찰 및 협의결정	▪ 연간 위탁운영
	기념품 판매소	132.84	입찰 및 협의결정	▪ 연간 위탁운영
	기획전시실	711.83	1,000원/m ²	▪ 무빙월/분할대관가능
2층	2군 육감칠감 워크샵	63.58	100,000원	▪ 프로젝터/좌석38
	3군 그린실험실	86.13	130,000원	▪ 프로젝터/좌석41
3층	4군 Live Science	46.13	70,000원	▪ 프로젝터/좌석61
	4군 사이언스 실험실	17.64	30,000원	▪ 프로젝터/좌석30
옥상	야외 공연장	993.99	100,000원	▪ 무대/객석240

- [비고]
- 대관료는 과학관 휴관일을 포함하여 적용한다.
 - 대관료 부과는 대관준비 및 철거기간을 포함 1일 단위(9~18시)로 하되, 각 시설별로 4시간 이내 사용시 사용료의 1/2을 경감할 수 있다.
 - 하절기(7월~9월) 및 동절기(12월~2월)에는 냉·난방기 운영에 따라 상기 대관료의 50%를 할증하여 적용한다. (야외 공연장 제외)

[별표 2]

인천광역시 어린이과학관의 관람료(제7조 관련)

구분	상설전시관		4D 영상관	비고
	개인	단체 [20명 이상]		
어린이	2,000원	1,500원	1,000원	▪ 7세 ~ 12세
청소년 및 군인	2,000원	1,500원	1,000원	▪ 13세 ~ 19세 ▪ 전투경찰, 의무경찰, 경비교도 포함
어른	4,000원	3,000원	3,000원	▪ 20세 ~ 64세
<p>[비고] ▪ 4D 영상관은 상설전시관 관람객에 한하여 입장가능</p> <p>▪ 기획전시 별도요금 부과</p> <p>▪ 20명이상 단체 인솔자 1명 무료 관람</p> <p><u>* 단, 무료관람 및 요금감면은 입장시 신분확인을 위한 증빙서류를 제시한 자에 한함</u></p>				

관련법령 검토와 검토사항

<p>관련법령</p>	<p><input type="checkbox"/> 「과학관육성법」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제10조(관람료 및 이용료)①과학관은 관람료 및 기타 과학 기술자료 또는 시설의 이용에 대한 대가(이하“관람료등”이라 한다)를 받을 수 있다. ②국립과학관 및 공립과학관의 관람료등의 금액의 기준은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되 공립과학관의 관람료등은 과학 기술부령이 정하는 기준의 범위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 ○ 제23조(조례의 제정)특별시·광역시 또는 도는 과학관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. <p><input type="checkbox"/> 「과학관육성법」 시행규칙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제7조(관람료 및 자료이용료의 기준)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립과학관 및 공립과학관의 관람료 및 자료이용료의 기준은 별표와 같다. ○ [별표] 국·공립과학관의 관람료 및 자료이용료의 기준(제7조 관련) <p>1. 관람료</p> <table border="1" data-bbox="475 1104 1433 1429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 text-align: center;"> <thead> <tr> <th rowspan="2">구분</th> <th colspan="2">금액</th> <th rowspan="2">비고</th> </tr> <tr> <th>개인</th> <th>단체 (30명 이상)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어른</td> <td>4천원</td> <td>3천원</td> <td>20세 ~ 64세</td> </tr> <tr> <td>청소년</td> <td>2천원</td> <td>1천5백원</td> <td>13세 ~ 19세</td> </tr> <tr> <td>어린이</td> <td>2천원</td> <td>1천5백원</td> <td>7세 ~ 12세</td> </tr> <tr> <td>노인</td> <td>2천원</td> <td>1천5백원</td> <td>65세 이상</td> </tr> <tr> <td>장애인</td> <td>2천원</td> <td>1천5백원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국가유공자</td> <td>2천원</td> <td>1천5백원</td> <td></td> </tr> </tbody> </table> <p>비고: 국립과학관의 관람료 및 자료이용료는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범위에서 국립과학관장이 정하고, 공립과학관의 관람료 및 자료이용료는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</p> <p><input type="checkbox"/> 지방자치법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제104조(사무의 위임 등)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·검사·검정·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·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. 	구분	금액		비고	개인	단체 (30명 이상)	어른	4천원	3천원	20세 ~ 64세	청소년	2천원	1천5백원	13세 ~ 19세	어린이	2천원	1천5백원	7세 ~ 12세	노인	2천원	1천5백원	65세 이상	장애인	2천원	1천5백원		국가유공자	2천원	1천5백원	
구분	금액		비고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개인	단체 (30명 이상)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어른	4천원	3천원	20세 ~ 64세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청소년	2천원	1천5백원	13세 ~ 19세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어린이	2천원	1천5백원	7세 ~ 12세																												
노인	2천원	1천5백원	65세 이상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장애인	2천원	1천5백원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국가유공자	2천원	1천5백원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<p>관련법규 정비대상</p>	<p>“해당사항 없음”</p>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<p>특이사항</p>	<p>“해당사항 없음”</p>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